

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93 호
의결년월일	2005. 5. . (제 15 회)

제출일자	2005. 4. .
제 출 자	계 룡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및 정원보강지침」과 「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정원보강지침」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현행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정원을 4명 증원함(안 제2조).

< 승인기구 및 정원내역 >

구 분	계	6급	7급	8급	9급	비 고
계	4	1	1	1	1	
전담기구 신 설	3	1	1	-	1	명칭 : 과표담당
전담인력 보 강	1	-	-	1	-	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업무추진

3. 입법예고 : 의견제출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4명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 내역

< 직종별 >

구분	계	정무직	일 반	지 도	기능직	별정직
총 전	256	1	202	6	45	2
조 정	260	1	206	6	45	2
증 감	+4	0	+4	0	0	0

<일반직 직급별>

구 분	계	4~5급이상 (1%이내)	5급 (7%이내)	6급 (24%이내)	7급 (32%이내)	8급 (24%이내)	9급 (12%이상)
총 전	202명	3	14	48	65	48	24
조 정	206명	3	14	49	66	49	25
증 감	+4	0	0	+1	+1	+1	+1

나.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(행정자치부)

① 지자체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·정원보강 지침

-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라, 주택을 “토지+건물”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를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조사, 산정 및 결정, 고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·인력 보강 필요.

○ 수행기능

-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
- 전산입력 시가산정
- 개별주택가격 결정, 고시 및 개별통지
-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 등

○ 기구 및 정원규모

- 담당급 전담기구 설치(명칭 : 과표담당)
- 정원 : 3명(6급1, 7급1, 9급1)
- 직렬 : 세무직렬 책정 원칙

②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지자체 정원 보강지침

- 특별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, 시도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보강

○ 인력보강 : 실무인력 7급이하 1명(직렬 자율책정)

○ 수행부서 : 총무과

○ 존속기한 : 2006.12.31

다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
(정원의 규정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제8조제2항(정원책정기준)

라. 참고자료

- 신·구조문대비표

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256”를 “260”로 하고, 같은조 제1호중 “245”을 “249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(제3조와 관련)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	직속기관	면·동
총 계	260	190	11	28	31
정 무 직	1	1			
일 반 직	206	158	6	18	24
4급	1	1			
4급~5급	2	1		1	
5급	14	9	2		3
6급	49	39	1	3	6
7급	66	51	2	7	6
8급	49	37	1	5	6
9급	25	20		2	3
별 정 직	2	1		1	
6급상당	1	1			
8급상당	1			1	
지 도 직	6			6	
기 능 직	45	30	5	3	7
6급	1	1			
7급	4	2	1		1
8급	7	5	2		
9급	14	13		1	
10급	19	9	2	2	6

관 련 법 령(발 체)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1조 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8조 (정원채정기준)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·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)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[별표 5] <개정 2003.5.1, 2004.9.24>

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8조제2항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가. 특별시·광역시·도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
특 별 시	4% 이내	14% 이내	33% 이내	34% 이내	15% 이상
광 역 시	4% 이내	14% 이내	31% 이내	34% 이내	17% 이상
도	5% 이내	20% 이내	33% 이내	34% 이내	8% 이상

나. 시·군·자치구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시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2% 이내	24% 이내	12% 이상
군	1% 이내	6% 이내	27% 이내	31% 이내	24% 이내	11% 이상
자치구	1% 이내	7% 이내	19% 이내	29% 이내	31% 이내	13% 이상

비고

1.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읍·면·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2.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% 이내, 7급을 30% 이내로 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특 별 시	6% 이내	8% 이내	20% 이내	30% 이내	36% 이상
광 역 시	4% 이내	9% 이내	16% 이내	31% 이내	40% 이상
도	4% 이내	9% 이내	15% 이내	32% 이내	40% 이상
시	3% 이내	9% 이내	15% 이내	33% 이내	40% 이상
군	3% 이내	9% 이내	16% 이내	32% 이내	40% 이상
자 치 구	3% 이내	6% 이내	14% 이내	32% 이내	45% 이상

비고 :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읍·면·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 구 관	연 구 사	지 도 관	지 도 사
특별시	16% 이내	84% 이상	5% 이내	95% 이내
광역시	16% 이내	84% 이상	5% 이내	95% 이내
도	15% 이내	85% 이상	26% 이내	74% 이내
시	3% 이내	97% 이상	6% 이내	94% 이내
군	3% 이내	97% 이상	8% 이내	92% 이내

비고 : 자치구는 군에 준하여 책정하되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읍·면·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4. 소방직공무원

구 분	소방정 이 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특별시	1% 이내	2% 이내	4% 이내	5% 이내	15% 이내	33% 이내	40% 이상
광역시	1% 이내	3% 이내	4% 이내	5% 이내	15% 이내	32% 이내	40% 이상
도	1% 이내	2% 이내	3% 이내	6% 이내	15% 이내	33% 이내	40% 이상

5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 상 상 당	5급 상 당	6급 상 당	7급 상 당	8급 상 당	9급 상 당
특 별 시	6% 이내	6% 이내	21% 이내	41% 이내	24% 이내	2% 이상
광 역 시	9% 이내	11% 이내	21% 이내	39% 이내	18% 이내	2% 이상
도	15% 이내	14% 이내	25% 이내	32% 이내	12% 이내	2% 이상
시		7% 이내	34% 이내	39% 이내	18% 이내	2% 이상
군		7% 이내	50% 이내	29% 이내	12% 이내	2% 이상
자 치 구		7% 이내	19% 이내	48% 이내	24% 이내	2% 이상

비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읍·면·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참 고 자 료

【신 · 구조문 대비표】

현 행	개 정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56</u>인으로 하고, 이를 다음 각호와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245</u>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 원의 총수는 <u>260</u>인으로 하고, 이를 다음각호 와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249</u>명

【신 · 구조문 대비표】

[별표1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(제4조와 관련)

현행						개정					
직급별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면동	직급별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면동
총 계	256	186	11	28	31	총 계	260	190	11	28	31
정무직	1	1				정무직	1	1			
일반직	202	154	6	18	24	일반직	206	158	6	18	24
4급	1	1				4급	1	1			
4급~5급	2	1		1		4급~5급	2	1		1	
5급	14	9	2		3	5급	14	9	2		3
6급	48	38	1	3	6	6급	49	39	1	3	6
7급	65	50	2	7	6	7급	66	51	2	7	6
8급	48	36	1	5	6	8급	49	37	1	5	6
9급	24	19		2	3	9급	25	20		2	3
별정직	2	1		1		별정직	2	1		1	
6급상당	1	1				6급상당	1	1			
8급상당	1			1		8급상당	1			1	
지도직	6			6		지도직	6			6	
기능직	45	30	5	3	7	기능직	45	30	5	3	7
6급	1	1				6급	1	1			
7급	4	2	1		1	7급	4	2	1		1
8급	7	5	2			8급	7	5	2		
9급	14	13		1		9급	14	13		1	
10급	19	9	2	2	6	10급	19	9	2	2	6